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관련사항 안내

(2010. 12. 1)

1. 신청인

○ 애니메이션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서류 접수 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을 위한 행정사항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해외 공동제작의 경우 국내측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또는 공동 제작계약에 의한 국내측 주관사

2.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에 따라 A4 용지로 작성)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 신청서(첨부2의 별지 1호서식)

나. 제작참여 확인서(첨부2의 별지 2호서식)

※ 일반인, 학생 등이 비상업적으로 제작한 단편·독립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부 제작 참여자가 연락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작참여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을 시, 신청인과 제작에 참여한 자 중 대표성 있는(프로듀서, 기획착안, 총감독 등) 1인이 연명한(총 2인) 사유서로 갈음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의 제작참여자가 자막(크레딧)상에 당해 항목의 제작참여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될 수 있음

다. 시놉시스

라. 캐릭터집

마. 배경(전체 시리즈 중 일부)

바. 스토리 보드(전체 시리즈 중 일부)

사. 국내 방송용 완성작품(전체)

○ 국내 더빙, 음악/음향, 성우, 자막(크레딧)이 포함된 방송용 완본

- 1개 기록매체에 여러 편이 수록되어도 되며, 다만 재생화면상 편수를 구분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 아. 해외 방송용 완성작품(일부, 국내+해외 합작물인 경우)
 - 해외방송 완본(외국어 제작참여 크래딧 포함)
- 자. 투자 및 제작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번역본 첨부)
 - 국내+해외 합작물의 경우, 계약서상 지적재산권·수익분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을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 제출
- 차.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국내인 참여부문 및 편수 기재)
- 카. 해외주재 공관 확인서(외국인과 공동 총감독인 경우)

3. 신청인 출석 및 추가자료 제출

- 신청인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판정 자문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판정

- 신청 작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임을 ‘인정’함

5. 기타 협조 요청사항

- 판정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판정 기대 일자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람

※ 신청서 접수는 매달 10일 마감

- 신청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공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람
 - 신청서의 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별지첨부”로 기입하고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 모든 내용에 오기와 허위사실이 없도록 작성
 - 특히 제목의 경우 한글과 영문(대·소문자), 띄어쓰기, 부호 등이 콘텐츠의 원제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제작참여 확인서는 신청서의 제작부문별로 분리하여 작성
 - 프로듀서, 총감독, 스토리보드 등 제작부문별로 분리하여 작성
 - 일반인·학생 등이 제작한 비상업적 단편·독립 애니메이션 등 전체 제작참여자가 2~3인 내외로 소수이며 다수의 제작부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작성(제작참여 확인서 작성 예 2 참조)
 - 신청서의 항목과 일치되게 작성
- 국내제작 판정을 받은 작품을 재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에게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정 여부를 통보하는 공문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람
 - ※ 경우에 따라 재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붙임 : 1. 제작참여 확인서 작성 예
 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발췌문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필요시 변경(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제작참여 확인서

작품명 : 춘향전

본인은 위 작품의 제작과정 중 (총감독)부분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인

성명 : 이몽룡 (서명 또는 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자택(000-0000), 사무실(000-0000)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작참여 확인서

작품명 : 춘향전

본인은 위 작품의 제작과정 중 (원화, 선·채화)부분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인

성명 : 변사또 (서명 또는 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자택(000-0000), 사무실(000-0000)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개정 2008. 12.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0. 02. 0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 3호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1 >

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1. 공통기준

가. 각 분야별 점수의 합계가 20점 이상(가산점을 포함)인 제작물

나. 제작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와는 별도로 2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이차원(2D) 애니메이션

①프로듀서: 2점, ②기획 착안: 2점, ③지적 재산권: 1점, ④수익분배권: 1점, ⑤시나리오: 2점, ⑥모델(캐릭터) 디자인: 2점, ⑦총감독: 2점, ⑧스토리보드: 2점, ⑨배경 디자인: 2점, ⑩배경제작(컬러): 2점, ⑪레이아웃(기본 구도) 제작: 1점, ⑫원화 제작: 2점, ⑬동화 제작: 2점, ⑭선·채화: 1점, ⑮촬영: 1점, ⑯영상 편집: 1점, ⑰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⑱성우 녹음: 1점, ⑲효과 음악: 1점, ⑳음향효과·믹싱: 1점

3. 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 2점, ②기획 착안: 2점, ③지적 재산권: 1점, ④수익 분배권: 1점, ⑤시나리오: 2점, ⑥기본 디자인: 2점(캐릭터-1점, 배경-1점), ⑦매핑/텍스처링: 1점, ⑧모델링: 4점(캐릭터-2점, 배경-2점), ⑨총감독: 2점, ⑩스토리보드: 2점, ⑪애니메이션: 2점, ⑫비주얼 이펙트/합성: 2점, ⑬영상 편집: 1점, ⑭렌더링: 2점, ⑮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⑯성우 녹음: 1점, ⑰효과음악: 1점, ⑱음향효과·믹싱: 1점

4.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 2점, ②기획 착안: 2점, ③지적 재산권: 1점, ④수익 분배권: 1점, ⑤시나리오: 2점, ⑥기본 디자인: 2점(모델 디자인-1점, 배경 디자인-1점), ⑦스토리보드: 2점, ⑧모델 제작: 4점(캐릭터 제작-2점, 세트 제작-2점), ⑨총감독: 2점, ⑩미술 감독: 1점, ⑪조명: 1점, ⑫스톱모션 애니메이션: 2점, ⑬촬영: 2점, ⑭영상 편집: 1점, ⑮FX/합성: 1점, ⑯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⑰성우 녹음: 1점, ⑱효과음악: 1점, ⑲음향효과·믹싱: 1점